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86 발의연월일: 2021. 12. 20.

발 의 자:태영호·이종배·김정재

이 영·장제원·김영식

송석준·조경태·최승재

이주화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3 신설).

- 나. 긴급응급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응급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
- 다.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 라.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제17조의4 신설).
- 마.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조의5 신설).
- 바.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 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6 신설).
- 사.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

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수 있음(안 제17조의8 신설).

- 아.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 자.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5조제5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범죄의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3장(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 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ㆍ귀가 시 동행
-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 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 호명령"으로 본다.
- 제17조의7(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 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7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

- 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잠정조치의"를 "잠정조치 등의"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피해자의 신원 등 누설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제21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
	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	⑤ <u>2개월</u> -
을 초과할 수 없다.	<u>.</u>
<u><신 설></u>	제17조의2(피해자의 신원과 사생
	<u>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u>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
	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
	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
	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
	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신 설>

<신 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
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
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u> 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 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 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 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원
 에 출석・귀가 시 동행
- 2.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 시설 등으로 인도
- 3.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 적 순찰
-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신 설>

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 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 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 1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

<신 설>

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 다.

제17조의7(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1
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
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

제3장 벌칙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 |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현행 략)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삭 제>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 제20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 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 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조사 · 심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4장 벌칙

과 같음)

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정조:	치를	이행	하기	() ()	-니한	사
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 2
천만	원 이	하의	벌	금에	처한I	구.
<신	설>					

<신 설>

당하는
<u>.</u>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
2.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
호명령 또는 제17조의6에 따
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세20조의2(피해자의 신원 등 누
설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
~~~~~~~~~~~~~~~~~~~~~~~~~~~~~~~~~~~~~
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을 공개한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u>2</u>
천만원
<u> </u>
②・③ (현행과 같음)